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9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9구합683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등
원 고	A
피 고	[redacted]시 [redacted]출장소장
변 론 종 결	2020. 3. 26.
판 결 선 고	2020. 4.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0. 17. 원고를 주식회사 B의 체납지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지방소득세 2,482,570원(가산금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9

가.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은 2013. 12. 11.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는 B의 주주명부상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위 회사 발행주식의 25%를 가진 주주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등기부상 2014. 2. 3.부터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나. B은 2017. 6. 부과된 2016년 귀속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9,930,310원(가산금 포함, 이하 '이 사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B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8. 10. 17.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 중 원고의 지분에 해당하는 2,482,570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소득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1. 16. [redacted]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redacted]시장은 2019. 2. 28.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호증, 을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주주로 등재된 경위조차 알지 못하고,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적도 없다. 따라서 원고는 B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정한 과점주주라고 할 수 없다.

설령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제1차 납세의무자인 B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B의 재산으로 이 사건 체납세액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9

제2차 납세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점주주 해당 여부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의 의미는, 과점주주 중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자들은 모두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다만 그 책임 범위는 자신의 소유지분 범위 내로 제한된다는 취지로 봄이 타당하고,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8. 1. 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 한편, 위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9

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B의 주주명부상 대표이사인 C과 그 배우자인 D, C의 외숙모인 E과 외사촌인 원고는 B의 발행주식 중 35%, 10%, 30%, 25%의 각 지분(합계 100%)을 보유한 주주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B에 주주로 등재될 무렵 B의 사내이사로 취임하면서 그 등재에 필요한 서류인 인감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은 점, ② B 임원 선임을 위한 2014. 2. 3.자 임시주주총회의사록에 의하면 원고가 임시주주총회에 출석하여 날인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원고는 대표이사와 사촌 관계에 있었을 뿐 아니라 실제로 B에서 근무하며 세금계산서 관리, 입출금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등 회사 운영 사정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보유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출자금을 납부하거나 배당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등의 사정이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선뜻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서 정한 B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부족액이 존재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된 납세의무에 징수부족액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만, 일단 주된 납세의무가 체납된 이상 그 징수부족액의 발생은 반드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9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현실로 체납처분을 집행하여 부족액이 구체적으로 생기는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다만 체납처분을 하면 객관적으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되면 족하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누14756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을8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 무렵 확인되는 B의 재산은 시가표준액 6,006,000원 상당의 차량 1대뿐인 사실, 당시 B은 이 사건 체납세액 외에도 합계 9,000만 원이 넘는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B에 대하여 이 사건 체납세액에 관한 체납처분을 집행하면 객관적으로 주된 납세의무에 대한 징수부족액이 생길 것으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국 원고에 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정중

판사 박설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9

판사 송명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9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 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20-05-19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